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-12835 호

시행일자 2023. 1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영유아용(6개월~4세)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 및 초도물량 신청
안내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264(2023.1.18.)

3.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서는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에 따라, 6개월~4세 영유아(특히, 고위험군)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기초접종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접종기관 지정기준 및 초도물량 신청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**접종개요 및 신청방법**

가. **백신종류** : 화이자사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(0.2mL씩 3회 투여, 8주간격 예정*)

* 향후 접종간격 관련 실시기준 확정 및 안내 예정

나. **접종일정** : 2월 중순 당일접종 시작 예정

다. **접종대상** : 영유아(6개월~4세) 고위험군 **접종 권고**(일반 영유아도 접종 가능)

라. **신청방법** : 지자체에서 1.25(수)까지 취합하여 질병관리청에 으로 회신예정이므로, 사전에 지자체(보건소) 문의 및 신청

○ **접종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**

가. **적정 접종기관 수**

- 6개월-4세 연령대만 사용가능한 백신으로, 안전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위탁 의료기관 지정 및 **주1일 요일제 운영 예정**

- 시군구당 최소 3개소, 최대 5개소 지정

나. **접종기관 지정기준(필수)**

-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(NIP)을 통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원, 병원, 아동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

- 소아용 응급처치 약물·장비를 구비(*세부내용 붙임참조)하여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,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위탁의료기관
 - 다. 교육이수 : 접종시행 전까지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술기 교육 이수 필요
 - 라. 초도물량 신청 및 배송
 - 보건소 및 참여위탁의료기관은 당일접종 수요, 백신정보* 등을 고려하여 필요물량을 충분히 신청
- * 1바이알 당 10도즈, 유효기간 - 해동후 10주

- ※ 붙임 : 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 2.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1부.
 3.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 신청 관련 협조요청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